2026년도 예산총칙

○ 제1조 : 2026년도 세입/세출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분		세입,세출예산총액		
		구분	금액	감소(전년대비)
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	비타민너싱홈	세입예산액	904,616	-8,234
		세출예산액	904,616	-8,234

○ 제2조 : 세입/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-세출예산”과 같다,

○ 제3조 : 2025년도 차입금은 50,000천원 한도내에서 단기차입할 수 있다.

○ 제4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30,000천원으로 한다.

○ 제5조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, 장기요양수입급여, 입소자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 한 경우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, 이후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○ 제6조 :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동일 항목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비타민너싱홈